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요령

I 정당현수막 의미

□ 정당현수막의 인정원칙

- ① 민주·정당 정치의 발전을 위해 폭넓게 허용 (제3조·제4조 배제)
 -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위해 넓게 허용
 - 사전적 허용, 사후적 제한 방식으로 최대한 설치 자유를 보장
 - 통상적 정당활동 보호범위에 대한 정당법-옥외광고물법 간 해석 조율
- ②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제한 적용 (제5조 적용)
 -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 한해서는 설치 제한

□ 적용배제 정당현수막의 의미

① 설치 주체로서의 '정당'

- 정당법 제2조의 '정당'으로서, 선관위 등록 정당이 정당명으로 표시
 - ※ ①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의 직위(국회의원, 당원협의회장 직위 복수 기재 권고), 성명 / ②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의 직위, 성명 / ③ 해당 정당의 중앙당 전국위원회 중 전국청년위원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당직인 전국청년위원장의 직위, 성명이 포함된 경우는 정당에서 설치한 정당 현수막으로 볼 수 있음

『정당』이 아닌 사례

- ① 정당의 명칭 없이 정당의 로고만 표시하는 경우
 - ※ 정당 명칭만 있거나, 정당 로고에 정당 명칭이 포함된 경우는 가능
- ② 당 대표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지방의원, 지자체장, 일반 당원 등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 이름과 함께 표시·설치한 현수막은 개인 현수막
- ③ 정당과 함께 시민단체, 조합 등 단체 명칭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 ※ 단체에서 후원한 사실을 명기하는 것을 포함함

(참고) 정당현수막이 아닌 사례

<p>정당 로고</p> <p>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00 (국회의원) 표시기간 00.00.~00.00 연락처(정당) 000-0000, (설치업체) 000-0000</p>	<p>00 협상 무효! 00 당 표시기간 00.00.~00.00 연락처(정당) 000-0000, (설치업체) 000-0000</p>
<p>① 정당 명칭 없이 정당의 로고만 표시 (불가)</p>	<p>①-1 정당 명칭만 표시 (가능)</p>
<p>정당 로고 00당</p> <p>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00 (국회의원) 표시기간 00.00.~00.00 연락처(정당) 000-0000, (설치업체) 000-0000</p>	<p>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0 당, 000 (00시의원) 표시기간 00.00.~00.00 연락처(정당) 000-0000, (설치업체) 000-0000</p>
<p>①-2 정당 로고에 정당 명칭이 포함 (가능)</p>	<p>②-1 정당이나 당대표, 당협위원장에 의한 정당현수막이 아닌 개인 현수막 (불가)</p>
<p>00 대통령 서거 0 주기 000 (00당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표시기간 00.00.~00.00 연락처(정당) 000-0000, (설치업체) 000-0000</p>	<p>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0 당 / 0000 연합 표시기간 00.00.~00.00 연락처(정당) 000-0000, (설치업체) 000-0000</p>
<p>②-1 정당이나 당대표, 당협위원장에 의한 정당현수막이 아닌 개인 현수막 (불가)</p>	<p>③ 정당과 시민단체의 명칭을 함께 표시 (불가)</p>

② '정당 경비'에 따라 제작·설치

-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정당의 경비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함
- 따라서, 정당 경비에 따라 제작, 설치하는 현수막만을 의미하며, 의원이나 당원 등 개인 경비로 설치하는 현수막을 포함하는 것은 아님
- 정당 경비 이외의 비용이 투입된 경우 정당현수막으로 인정 불가

③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 정당활동'

- ①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 ②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
- 통상적 정당활동 해당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각급 선관위에 질의

『통상적 정당활동』에 해당하는 사례

- ◇ 정당이 개인 치적이 아닌 객관적 사실을 기술한 국비 확보 등 홍보·축하
- ◇ 정당이 명절 인사, 수능 응원 등 의례적인 내용
- ◇ 정당이 주요 정책 홍보, 자당 정책 홍보·축하, 의결 법률 홍보 등

※ 공직선거법 등 선관위 소관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선관위 방침에 따름

II

옥외광고물법 개정 주요 내용 (24.1.12. 시행)

□ 추진 배경

-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22.12.10.) 이후 정당현수막 난립 및 안전 문제, 환경 오염, 도시미관 저해 발생

* 정당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신고 및 설치 장소 제한 없이 설치 가능

-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국민 생활환경의 조화를 위해 정당현수막의 개수, 설치장소 등 제한 강화

□ 개정 옥외광고물법(2024.1.12. 시행)

① 정당현수막 제한 강화(개수, 규격, 장소 등 규정)

-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규정

※ 면적 100km² 이상 읍면동은 1개 추가 설치 가능 → 전체 3,524개 읍면동 중 192개(약 5% 수준) / 경기 수원시 전체 면적(44개동, 121km²)과 유사, 서울시(426개동) 면적(605km²)의 1/6 수준

-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 안전 저해 장소(시행령 위임) 외의 장소에 설치

- 그 외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 현수막 표시기간(15일) 경과시 표시·설치자가 신속히 자진철거

② 표시·설치방법 위반 현수막에 대한 철거 등 행정조치 근거 마련

③ 공포한 날부터 시행(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배제 광고물등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8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설치한 광고물등은 제8조제1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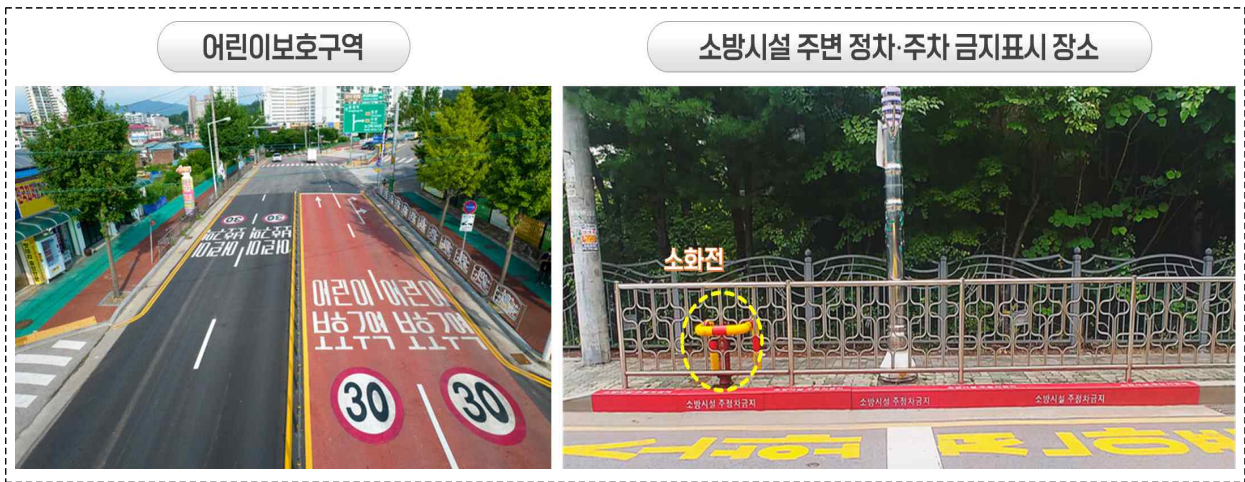
□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2024.1.12. 시행)

◆ 정당현수막 가이드라인(23.5.4.)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관련 법령* 규정사항 준용

* 공직선거관리규칙(현수막 규격 등), 도로교통법(설치 금지 및 제한장소 관련)

① (금지 장소)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표시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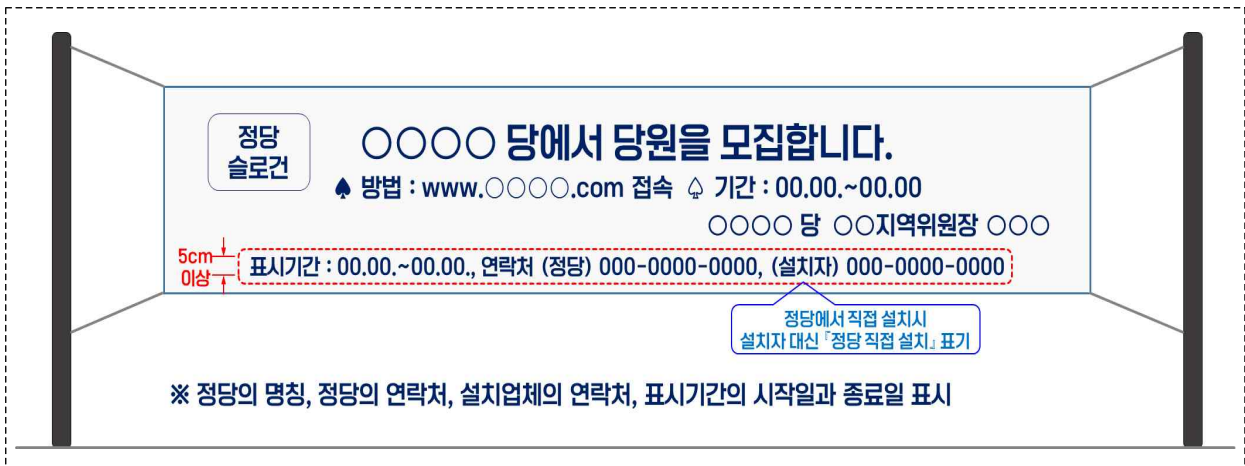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6호 및 제8호 준용



② (규격) 10㎡ 이내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현수막) 준용

③ (표시기간·방법) 정당명, 연락처, 표시기간(15일)은 현행과 동일하게 하되, 기간 표시방법 및 최소 글씨 크기를 규정*하여 의미 명확화

* 시작일을 표시기간에 포함, 시작일·종료일 병기, 글씨 세로 크기는 5cm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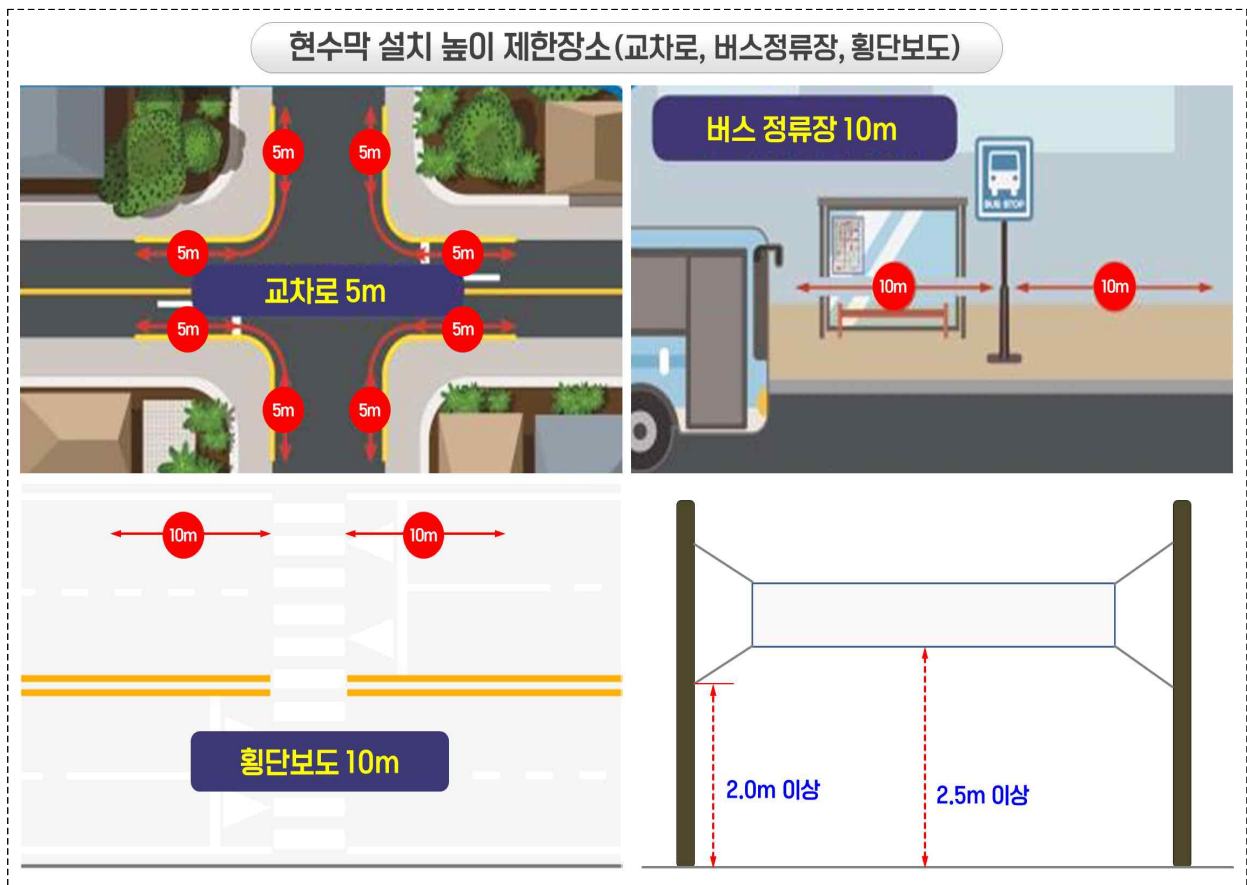


④ (설치 방법) 공직선거관리규칙, 도로교통법 등 제한사항 반영

- 다른 현수막·신호기·안전표지 등을 가리거나 도로 횡단 금지, 가로등·전봇대 등에는 2개 초과 금지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 선관위 기준 등 준용



-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일정 구간(5~10m, 주정차 금지 구간)내 현수막 높이 2.5m 미만 설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2조 준용



Ⅲ 설치 및 관리 주체의 역할

□ 정당

-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경우에 한해 설치
 - 선관위 유권해석 등에 따라 통상적 정당활동에 의한 정당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판단시 적용배제 현수막이 아닌 불법 광고물

⇒ **철거명령·조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개정 옥외광고물법령에 맞게 설치
 - 읍면동별 현수막 설치 개수, 규격, 표시기간 및 방법, 설치방법 위반시 적용배제 현수막이 아닌 불법 광고물

⇒ **철거명령·조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태풍 등 기상 상황 발생 또는 가로등 안전점검 결과 이상 발견시
 - 사고 예방을 위한 지자체 철거 요청 등에 협조 및 자진 철거
 - ※ 별도 요청을 위한 시간이 없거나 상황이 긴박한 경우 지자체에서 직접 처리
- SNS, 전자게시대/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지정게시대 우선 활용

□ 지방자치단체

- 정당현수막 요건 및 옥외광고물법령 준수 여부 확인
- 초기 운영단계에서는 위반 현수막에 대해 정당(설치업체)에 우선 시정요구(철거 또는 이동 게첨 요청) → 미이행시 강제 처분 조치
- 시정 요구할 시간이 없거나 긴박한 상황인 경우 지자체 자체 처리
 - ※ 직접 처리시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증거 및 통화기록 등 확보

- 표시기간이 남은 현수막을 철거한 경우에는 일시 보관 권고
- 철거시 국민의 정치활동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신중한 검토 필요**(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
- 위반현수막에 대해서는 **강제처분 및 과태료 부과도 가능**
 - ※ 표시·설치기간 만료시 자진철거 의무 부과(§8②), 위반한 현수막에 대한 필요한 조치(§10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신속히 제거(§10의2④) 등 명문화

- ① **(강제처분의 법적근거)** 법령 위반시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제거 등 조치가능
- ② **(과태료 부과 가능성)** 법령 위반시 적용배제 현수막이 아니며, 제3조에 따라 허가·신고 대상이 되므로 제3조 위반에 따라 제20조에 근거하여 표시·설치자(정당/설치업체)에 부과
- ③ **(개수 초과시 정비 우선순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설치방법 등 위반 현수막
→ 표시기간내 현수막 중 후순위로 게첩한 현수막(장소별, 정당별)

- 정당현수막의 경우 제3조와 제4조는 적용배제되나, 제5조는 적용되며, 통상적 정당활동* 여부는 선관위에서, 제5조 요건은 지자체에서 판단
 - * 현재는 선거일 90일 전('24.1.11.)이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되는 사항이 많은 시점
이므로 통상적 정당활동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각급 선관위에 질의

□ 설치업체(정당에서 업체에 설치를 위탁하는 경우)

- **(자격요건)** 옥외광고물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고,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일 것
- **(제작시)** 표시방법·기간, 내용상 위법 등 준수 ※ 기간 경과시 자진 철거
- **(설치시)** 설치 수량, 장소 등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치
- **(협조사항)** 지자체의 철거 또는 이동 게첩 요청에 적극 협조
 - ※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에서 표시·설치시 해당 업체에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참고 1

옥외광고물법('24.1.12. 시행) 개정 전후 비교

구분	현행	개정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현수막은 신고를 거치지 않고, 장소 제한 없이 설치 가능 	<좌 동>
제한 사항	<p>개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 없음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별 2개 이하로만 설치 <p>※ 단, 면적이 100km² 이상인 읍면동에는 추가로 1개의 현수막 설치 가능</p>
	<p>장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 없음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 저해 장소(대통령령으로 위임) 외의 장소에만 설치
	<p>표시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으로 위임 <p>* 정당 현수막에 정당 명칭, 정당·설치 업체 연락처, 표시기간을 기입</p>	<좌 동>
	<p>표시 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으로 위임 <p>* 표시기간 15일</p>	
	<p>그 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 없음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격 등 그 외 표시·설치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 ▶ 표시기간(15일) 경과시 현수막을 표시·설치한 자가 자진철거
행정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규정 없음 	<p><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 현수막 허용범위 위반시 철거등 조치 가능

참고 2

옥외광고물법 시행령(24.1.12. 시행) 개정 전후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설치금지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 없음 ※ 다만, 법 제5조(금지광고물 등)에 따라 교통수단의 안전 이용자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 준용,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 •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표시 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준용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m²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 제1항 준용
표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시작일을 표시기간에 포함, 시작일·종료일 병기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명, 연락처, 표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과 같음 • 글씨 크기 제한(세로 5cm 이상)
설치방법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현수막, 신호등·안전표지, CCTV를 가리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 제4항 제2호 준용 •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 제4항 제3호 준용 •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가로등·전봇대에 현수막 2개를 초과하여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관위(서울) 기준 준용 • 보행자 통행 또는 차량 운전자 시야 방해 우려 장소(교차로(5m 이내), 횡단보도(10m 이내), 버스정류장(10m 이내))에서 현수막 아랫 부분 높이가 2.5m 이상,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 높이가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제5호, 도로법 제50조·제52조 준용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외 현수막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사항은 행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의 범위, 관련 사례 등 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 내용 규정(정당현수막 가이드라인 중시)

참고 3

읍면동 면적 100km² 이상 지역 현황

□ 시도별 현황

시도	시군구 수		읍면동 수			면적 평균 (km ²)	인구 평균 (명)	비 고
	전체	대상	전체 (a)	대상 (b)	비율 (a/b)			
합계	167	65	2,537	192	7.6 ^{주)}	147	5,691	주) 전국 읍면동 3,524개 기준으로 5.4%
대구	9	2	150	3	2.0	109	3,755	달성군 가창면, 군위군 소보면·삼국유사면
울산	5	1	56	1	1.8	124	7,898	울주군 상북면
경기	31	4	567	11	1.9	131	8,845	포천시 이동면, 양평군 단월면, 가평군 가평읍, 연천군 신서면 등
강원	18	16	193	79	40.9	170	5,212	춘천시 동면, 원주시 문막읍, 태백시 삼수동, 홍천군 홍천읍 등
충북	11	6	153	13	8.5	131	4,788	청주시 미원면, 제천시 봉양읍, 영동군 영동읍, 괴산군 칠성면 등
충남	15	3	208	5	2.4	109	7,888	공주시 유구읍, 서산시 대산읍 등
전북	14	5	243	8	3.3	119	3,950	남원시 산내면, 완주군 동상면, 진안군 진안읍, 무주군 설천면 등
전남	22	7	297	9	3.0	111	5,040	순천시 공광면, 곡성군 죽곡면, 구례군 신동면, 고흥군 포두면 등
경북	22	12	322	45	14.0	140	4,662	풍향시 장기면, 경주시 내남면, 안동시 와룡면, 의성군 옥산면 등
경남	18	7	305	11	3.6	119	3,483	밀양시 산내면, 양산시 원동면, 하동군 화개면, 산청군 삼장면 등
제주	2	2	43	7	16.3	154	19,676	제주시 애월읍, 서귀포시 남원읍 등

□ 읍면동별 세부 현황

연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인구(명)	면적(km ²)
합계	11개	65개	192개	5691	147
1	대구	달성군	가창면(嘉昌面)	7,662	111.33
2	대구	군위군	소보면(召保面)	2,296	101.35
3	대구	군위군	삼국유사면(三國遺事面)	1,308	114.60
4	울산	울주군	상북면(上北面)	7,898	123.58
5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二東面)	6,010	112.90
6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丹月面)	3,903	107.74
7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楊東面)	4,611	120.35
8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龍門面)	18,012	102.57
9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加平邑)	19,539	144.86
10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雪岳面)	9,691	141.65
11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淸平面)	13,874	112.27
12	경기도	가평군	상면(上面)	5,639	100.54
13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朝宗面)	9,595	113.06
14	경기도	가평군	북면(北面)	3,812	231.20
15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新西面)	2,610	148.40
16	강원도	춘천시	동면(東面)	19,352	134.30
17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南山面)	3,360	123.88
18	강원도	춘천시	서면(西面)	3,700	141.52
19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史北面)	2,449	152.45
20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北山面)	985	214.94
21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文幕邑)	18,023	104.31
22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所草面)	8,456	103.41
23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神林面)	3,576	127.79
24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王山面)	1,548	245.71
25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江東面)	4,056	112.71
26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玉溪面)	3,427	148.83
27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連谷面)	6,305	202.53
28	강원도	태백시	삼수동(三水洞)	5,409	113.91
29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道溪邑)	9,397	164.64
30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遠德邑)	4,823	177.68
3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近德面)	4,960	133.68
32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下長面)	1,264	205.74
33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盧谷面)	704	144.70
34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柯谷面)	670	152.35
35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洪川邑)	34,152	107.47
36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化村面)	4,373	211.59

연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인구(명)	면적(km ²)
37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斗村面)	2,435	140.89
38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乃村面)	2,421	146.84
39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瑞石面)	3,691	224.86
40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詠歸美面)	4,154	149.72
41	강원도	홍천군	남면(南面)	5,784	120.43
42	강원도	홍천군	서면(西面)	3,801	123.42
43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北方面)	4,050	146.51
44	강원도	홍천군	내면(內面)	3,116	448.85
45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屯內面)	5,897	127.92
46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甲川面)	2,455	123.57
47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晴日面)	2,393	133.90
48	강원도	횡성군	공근면(公根面)	3,448	129.17
49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書院面)	2,063	123.37
50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寧越邑)	20,706	172.40
51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上東邑)	1,002	139.80
52	강원도	영월군	산솔면(山솔面)	1,399	124.70
53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金삿갓面)	1,721	171.30
54	강원도	영월군	북면(北面)	2,077	111.10
55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酒泉面)	3,719	102.50
56	강원도	영월군	무릉도원면(武陵桃源面)	2,079	153.60
57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平昌邑)	8,407	161.26
58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美灘面)	1,610	109.79
59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芳林面)	2,551	120.86
60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大和面)	5,126	166.78
61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蓬坪面)	5,781	217.31
62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龍坪面)	3,101	135.30
63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珍富面)	8,508	331.30
64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大關嶺面)	5,906	221.58
65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旌善邑)	10,210	213.83
66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新東邑)	3,354	119.87
67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畫岩面)	1,613	135.11
68	강원도	정선군	남면(南面)	3,127	130.98
69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餘糧面)	1,949	136.29
70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北坪面)	2,427	140.77
71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臨溪面)	3,422	243.62
72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葛末邑)	11,775	171.48
73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東松邑)	14,460	127.50
74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近南面)	2,145	129.13
75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華川邑)	8,139	291.73
76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看東面)	2,640	128.17

연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인구(명)	면적(km ²)
77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下南面)	2,822	118.59
78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上西面)	3,844	219.27
79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史內面)	5,943	151.17
80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楊口邑)	13,609	173.96
81	강원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國土正中央面)	3,328	135.25
82	강원도	양구군	동면(東面)	2,009	125.71
83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方山面)	1,226	207.05
84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麟蹄邑)	10,785	316.36
85	강원도	인제군	남면(南面)	3,822	243.28
86	강원도	인제군	북면(北面)	7,932	349.09
87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麒麟面)	4,979	275.13
88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瑞和面)	2,666	264.97
89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上南面)	2,022	197.35
90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杆城邑)	7,104	180.37
91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土城面)	8,603	120.55
92	강원도	고성군	수동면(水洞面)	0	144.35
93	강원도	양양군	서면(西面)	2,764	267.80
94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縣北面)	2,644	164.83
95	충청북도	청주시	미원면(米院面)	4,751	129.54
96	충청북도	충주시	양성면(仰城面)	3,965	100.28
97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東良面)	3,586	109.40
98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鳳陽邑)	6,711	143.47
99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德山面)	2,134	111.55
100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白雲面)	3,304	135.06
101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永同邑)	19,729	100.64
102	충청북도	영동군	상촌면(上村面)	2,232	137.72
103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七星面)	3,078	101.70
104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靑川面)	5,186	208.85
105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大崗面)	2,391	134.92
106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佳谷面)	2,044	104.56
107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永春面)	3,131	180.35
108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維鳩邑)	7,122	101.46
109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正安面)	4,694	108.89
110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大山邑)	13,311	106.51
111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浮石面)	5,217	123.94
112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石門面)	9,094	103.38
113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山內面)	2,088	103.50
114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東上面)	1,066	106.63
115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鎭安邑)	9,773	115.88
116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富貴面)	2,836	104.58

연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인구(명)	면적(km ²)
117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雪川面)	3,896	158.24
118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赤裳面)	2,575	135.87
119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長水邑)	7,129	101.77
120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蟠岩面)	2,233	126.07
121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松光面)	1,447	109.84
122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西面)	14,219	103.54
123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竹谷面)	1,843	103.42
124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山洞面)	2,882	101.33
125	전라남도	고흥군	포두면(浦頭面)	4,750	112.31
126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筏橋邑)	11,176	102.57
127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有治面)	986	122.11
128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黃山面)	4,484	105.75
129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山二面)	3,572	138.16
130	경상북도	포항시	장기면(長鬐面)	3,955	100.45
131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興海邑)	40,382	107.18
132	경상북도	포항시	죽장면(竹長面)	2,752	235.87
133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安康邑)	23,568	138.90
134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外東邑)	22,179	109.93
135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文武大王面)	4,097	120.26
136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內南面)	4,577	122.07
137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山內面)	3,225	143.02
138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臥龍面)	3,907	117.04
139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吉安面)	2,633	200.18
140	경상북도	안동시	임동면(臨東面)	1,673	151.08
141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禮安面)	1,751	163.99
142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陶山面)	1,515	101.95
143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古鏡面)	5,629	120.56
144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聞慶邑)	6,869	156.75
145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加恩邑)	4,028	152.38
146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山北面)	2,693	111.42
147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東魯面)	2,028	142.16
148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籠岩面)	2,560	103.48
149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玉山面)	1,741	104.02
150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安平面)	2,122	101.22
151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周王山面)	1,789	133.03
152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府南面)	2,424	122.57
153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懸西面)	2,461	112.47
154	경상북도	청송군	안덕면(安德面)	2,530	107.80
155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眞寶面)	6,206	109.52
156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英陽邑)	7,025	130.79

연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인구(명)	면적(km ²)
157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靑杞面)	1,635	139.44
158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日月面)	1,708	126.65
159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首比面)	1,635	217.48
160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石保面)	1,970	122.30
161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知品面)	1,947	150.24
162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蒼水面)	1,557	152.34
163	경상북도	경산시	운문면(雲門面)	2,008	147.30
164	경상북도	경산시	매전면(梅田面)	3,736	130.19
165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物野面)	3,005	109.37
166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春陽面)	4,323	167.55
167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小川面)	2,113	265.08
168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石浦面)	1,907	150.20
169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才山面)	1,430	125.57
170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明湖面)	2,198	114.57
171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北面)	7,470	142.07
172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金剛松面)	1,227	298.61
173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梅花面)	1,963	101.50
174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溫井面)	1,618	131.91
175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山內面)	3,766	107.51
176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丹場面)	4,255	142.16
177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武安面)	4,839	100.37
178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院洞面)	3,336	148.10
179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花開面)	2,981	133.93
180	경상남도	산청군	삼장면(三壯面)	1,796	103.30
181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矢川面)	4,015	127.41
182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丹城面)	5,633	108.82
183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馬川面)	2,069	107.55
184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北上面)	1,543	125.32
185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伽倻面)	4,077	105.01
186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涯月邑)	37,697	202.38
187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舊左邑)	15,381	185.98
188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朝天邑)	25,788	150.68
189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南元邑)	18,498	189.08
190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城山邑)	15,427	107.61
191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安徳面)	12,414	105.67
192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表善面)	12,526	135.19